



[시행 2021. 6. 30] [법률 제17774호, 2020. 12. 29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국민연금정책과) 044-202-3604

- 102 ( )**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되, 가입자,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
  2.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
 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
  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
  5.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
  6.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 7.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(이하 “관리기금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
-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8.>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5. 1. 28.>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5. 1. 28.>

- 105 ( )**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(이하 “기금운용지침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1.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
  2.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
  3. 가입자,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
  4.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
  5.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·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
-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제17774호, 2020. 12. 29.>

1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2 (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3 (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- 4 (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